

제303회 임시회
2011.09.30.(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09.30.(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상필 교육위원외 6인

나. 발의일자 : 2011년 09월 09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09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09월 21일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필 교육위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책무성 강화

○ 평생교육수요자의 급증과 수요자의 학습욕구 다양화 등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실용적인 평생교육실시

-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과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게 하여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및 지원(안 제2조)
- 수요자 관점의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안 제3조)
-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학교의 중심 역할 명시(안 제4조제1항)
-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사항 명시(안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왕년)

-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제16조(경비 보조 및 지원), 제17조(지도 및 지원) 법령과 같은 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학교의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안 제1조에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 “평생교육기관의 지도 및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교육과정”을 정한 것은 <표 1>과 같이 학교 내에서 평생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규정이라고 생각됨.

<표 1>

2011년 상반기 학교 평생교육 운영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단위:천원)

구 분	실 시 학교수	프로그램 개설 강 좌 수	참여 연인원	소요예산	비 고
초등학교	226	313	115,196	302,558	
중 학 교	97	143	24,537	66,965	
고등학교	32	55	7,080	337,285	
특수학교	4	10	559	1,900	
합 계	359	521	147,372	708,708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산업정보평생과)

- 안 제4조에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 도서관, 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의무화 한 것은 평생교육 참여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직원의 인건비, 저소득층인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갖추는 적절한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 및 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 교육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 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과정)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수요자 관점에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위탁 받아 실시하는 자는 학교시설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법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 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8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3억원 이상

⑥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인건비
2. 저소득층인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
3. 실험·실습 교육지원경비
4. 교재·교구 구입비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업

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하지 않았거나,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배상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자는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